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1일, 한병도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7.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8.2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4. 8. 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평생교육법」에 따

라 설치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사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등의 조회가 불가하고, 해당 시설의 장애인들이 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조문상)

개정안은 취업제한기관인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명시하려는 것으로써, 이러한 시설은 학대피해장애인과 장애아동 등 장애인이 주 이용자로서 잠재적 재학대 위험 방지를 위해 시설 이용장애인들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들이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봄.

다만, 현행법상 취업제한기관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¹⁾ 현행법상으로도 이 두 시설은 취업을 제한되는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해서는 개정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개정안의 취지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제한기관 포함 여부가 쉽게 달라지지 않도록 법률로써 장애인 쉼터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상향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한편, 부칙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례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의 확대는 국민의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법률을 주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해 공포 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법률을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법 시행 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 판결을 받게 되는 사람은 신법과 구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임.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59조의13제1항의 장애인 쉼터

2. 법 제59조의13제2항의 피해장애아동 쉼터

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